



서울교육대학교와 북해도교육대학간의 교육연구교류에 관한 협정서

서울교육대학교와 북해도교육대학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협력관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학간협정을 체결한다.

1. 양대학은, 다음과 같은 교류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에 합의한다.
 - (1) 교육, 연구활동, 및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교환
 - (2) 교직원 및 학생의 교류
 - (3) 그 밖에, 장래에 있어서 합의되는 교육 및 연구교류

2. 교류활동의 세부적 사항은, 별도의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각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정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본 협정서는, 체결후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며, 매년 검토될 수 있다. 당초의 5년간의 유효기간 종료시, 어느 일방대학이 12개월 전에 타방대학에 종료통고를 하는 것에 의하여,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경우에, 이미 진행중인 사항에 관해서는 그 사항이 완료될때 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2009年 6月 29日

송 광 용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송 광 용

本間 謙二

북해도 교육대학 학장
本間 謙二



北海道教育大学とソウル教育大学校との 教育研究交流に関する協定書

北海道教育大学とソウル教育大学校は、教育と研究に関する協力関係を推進するために、ここに、大学間協定を締結する。

1. 両大学は、以下の交流活動を推進していくことに合意する。
 - (1) 教育・研究活動、及び必要な情報や資料の交換
 - (2) 教職員及び学生の交流
 - (3) その他、将来において合意されうる教育、研究交流
2. 交流活動の詳細は別途協議するものとし、必要によって覚書を締結するものとする。

本協定は、締結した日から効力を生じる。本協定は当初5年間の効力を有し、毎年見直される。当初の5年間の終了時に、いずれか一方の大学が12ヶ月前に他方の大学に対して通告することにより、本協定を終結させ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その場合、すでに進行中の事項は完遂するまで継続するものとする。

2009年 6月 29日

北海道教育大学長
本間 謙二

ソウル教育大学校 総長
宋光鏞



서울교육대학교와 북해도교육대학간의 학생교류계획에 관한 각서

서울교육대학교와 북해도교육대학은, 『서울교육대학교와 북해도교육대학간의 교육연구교류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학생교류계획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는 것에 합의한다.

1. 유학생은, 수용하는 대학에 있어서 연구생 또는 특별청강생의 대우를 하는 것으로 한다.
2. 유학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3. 유학생의 입학허가는, 당해유학생의 입학원서의 심사 및 본국으로부터의 추천을 고려한 후에 수용대학이 결정한다.
4. 유학생의 인원수는, 쌍방모두 각 3명 이내로 한다.
5. 유학생은, 수용대학의 지도와 허가하에 연구 또는 학습에 종사한다.
6. 유학생의 이수단위는, 양대학의 협의하에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유학생의 검정료, 입학료 및, 수업료는 상호 불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그 밖의 유학에 관한 비용에 관해서는, 당해유학생의 자기부담으로 한다.
8. 유학생은, 예측불허한 위험성에 대해 자기 책임을 갖고, 유학기간중에 있어서의 소지품의 파손이나 분실, 개인적 질병이나 상해, 사망에 관하여, 양대학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9. 유학생의 숙소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본 각서에 따른 학생교류에 관한 제문제에 대해서는, 양대학간의 협의하에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본 각서는, 양대학이 체결한 협정서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2009年6月29日

송 광 용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송 광 용

本間謙二

북해도교육대학 학장
本間 謙二



北海道教育大学とソウル教育大学校との 学生交流計画に関する覚書

北海道教育大学とソウル教育大学校は、『北海道教育大学とソウル教育大学校との教育研究交流に関する協定書』に基づき、新たに学生交流計画に関する覚書を交わすことに合意する。

1. 留学生は、受入れ大学において、研究生又は特別聴講学生として取り扱うものとする。
2. 留学期間は、原則として6ヵ月又は1年とする。
3. 留学生の入学許可は、当該留学生の入学願書の審査及び本国大学からの推薦を考慮の上、受入れ大学が決定する。
4. 留学生の人数は、双方共に3名以内とする。
5. 留学生は、受入れ大学の指導と許可のもとで研究又は学習に従事する。
6. 留学生の修得単位は、両大学で協議の上、認定する。
7. 留学生の検定料、入学料及び授業料は相互に不徴収とする。その他の留学に関する費用については、当該留学生の自己負担とする。
8. 留学生は、不測の危険性に対して自ら責任を持ち、留学期間中における所持品の破損や紛失、個人的な病気や怪我、死亡については両大学は責任を負わないこととする。
9. 留学生の宿舎については、できる限り学生寮を提供するものとする。

本覚書による学生交流に関わる諸問題については、両大学間で協議の上、解決していくこととする。本覚書は、両大学で締結した協定書の効力が有する期間有効なものとする。

2009年 6月 29日

北海道教育大学長
本間 謙二

ソウル教育大学校 総長
宋光鏞



서울교육대학교와 북해도교육대학간의
학술연구교류계획에 관한 각서

서울교육대학교와 북해도교육대학은, 『서울교육대학교와 북해도교육대학간의 교육연구 교류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학술연구교류계획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는 것에 합의한다.

1. 양 대학은, 합의된 기간내에 행하여지는, 강의, 연구활동에의 종사, 공동연구프로젝트의 추진을 목적으로 교환교류를 실시한다.
2. 양 대학은, 객원연구원의 수용처에 있어서의 연구 및 연구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공여 및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각서의 유효기간내에 공동연구프로젝트를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양 대학은, 객원연구원의 연구 및 연수에 필요한 숙박시설의 확보에 노력한다. 숙박비용 및 도항비는 객원연구원 개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요망이 있을 경우, 객원연구원의 수용대학은 학술연구교류에의 참가증명서를 발행한다.
5. 학술연구의 촉진을 목적으로, 양 대학의 도서관은, 도서, 정기 간행물 및 그 밖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 교환한다.
6. 서울교육대학교와 북해도교육대학간 학술연구교류 참가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학술연구교류 참가기간에 발생하는 소지품 파손 및 분실, 질병, 상해, 사망 등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는 개인책임을 전제한다. 이에 관하여 서울교육대학교와 북해도교육대학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본 각서 및 각 항목은, 양대학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본 각서에 의한 학술연구교류에 관한 제반문제는, 양대학간의 협의하에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본 각서는, 양 대학이 체결한 협정서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2009年 6月 29日

송 광 용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송 광 용

本間 謙二

북해도교육대학 학장
本間 謙二



北海道教育大学とソウル教育大学校との 学術研究交流計画に関する覚書

北海道教育大学とソウル教育大学校は、『北海道教育大学とソウル教育大学校との教育研究交流に関する協定書』に基づき、新たに学術研究交流計画に関する覚書を交わすことに合意する。

1. 両大学は、合意された期間行われる、講義、研究活動への従事、共同研究プロジェクトの推進を目的とした交換交流を行う。
2. 両大学は客員研究員の受け入れ先における研究及び研修遂行のため、可能な範囲において施設供与及び援助を行うものとする。また、本覚書の有効期限内に、共同研究プロジェクトを開始できるよう努力する。
3. 両大学は客員研究員の研究及び研修に必要な宿泊施設の確保に努力する。宿泊費用及び渡航費は客員研究員個人の負担とする。
4. 要望があった場合、客員研究員の受け入れ大学は学術研究交流への参加証明書を発行する。
5. 学術研究の促進を目的として、両大学の図書館は図書、定期刊行物及びその他の情報を必要に応じ交換する。
6. 本学術研究交流への参加は個人の意志によるものであり、何らかのリスクが伴うとの認識に立ち、参加者は以下の点を理解しているものとする。すなわち、北海道教育大学及びソウル教育大学校は、本学術研究交流参加期間における参加者個人の所持品破損及び紛失、疾病、傷害、死亡に関して、いかなる責任も負わない。
7. 本覚書および各項目は両大学の合意に基づき変更を加えることができる。

本覚書による学術研究交流に関わる諸問題については、両大学間で協議の上、解決していくこととする。本覚書は、両大学で締結した協定書の効力が有する期間有効なものとする。

2009年 6月 29日

北海道教育大学長
本間 謙二

ソウル教育大学校 総長
宋光鏞